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산업물류도시(○-○단계, ○공구) 입주협약 관리소홀 등

기 관 명 부산광역시(부산○○공사)

내 용

부산○○공사에서 「부산○○○○ ○○○○물류도시(0-0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9공구 단지($A=790,220\text{m}^2$, 절토 $V=14,320,767\text{m}^3$)를 조성하기 위해 도금액 94,369백만원에 2013. 12. 20.부터 2017.12.18.까지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공정 71.3%로 공사 중에 있다.

또한 같은 사업장인 9공구내 입주예정기업 부지 $178,409\text{m}^2$ (약 53,968평)에 데이터센터 4개동(2개필지)과 변전소 1개동을 건립하기 위해 2016. 5. 10. ○○○○○○○유한회사(이하, “○○사”라 한다)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2017. 9월 까지 공급시기를 확정하였다.

1. 업무협약 이행 및 공정관리 소홀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공사에서는 2016. 6. 14. ○○사로부터 1단계는 2017. 2월까지, 2단계는 2017. 6월까지 부지공급시기를 단축하여 달라는 변경요청 사항이 있어, 2016. 6. 29.~30일까지 ○○사와 현지 합동회의 개최와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1단계는 2017. 2월(9개월 단축)과 2단계는 2017. 6월(13개월 단축)까지 단축된 공사 일정과 같이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암파쇄 장비인 백호우와 브레카장비로 반영된 것을 추가로 4대 크라샤 장비를 투입(공사비 110억원, 3,770,000m³)하겠다고 방침 결정(○○○○처-0000(2016. 9. 13.) “송정북측 입주예정기업 부지조성관련 검토보고”)을 받고, 이후 2016. 8. 23. ○○사로 부지공급시기가 단축된 입주예정기업 명세변경 통지를 계약상대자와 책임감리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사로부터 부지공급시기 단축을 요청받고 방침내용에 따라 크라샤 장비 4대를 추가 투입하여 작업을 시행하던 중 2016. 11. 4. ○○사에서 당초 입주협약과 같이 2017. 9월까지 공급시기를 맞추어 주고 공기단축이 불필요하다

는 의견을 위 공사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나 책임감리원에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2016. 11. 4.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현장장비 투입계획이나 예정공정을 조정하여 관련 예산절감 등에 대한 절감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계약상대자나 책임감리원에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2016. 11. 4.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현장장비 투입 계획이나 예정공정 등을 조정하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 담당자와 이메일만 주고 받고 입주협약서 등을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크라샤 장비 투입이후 공기단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일(2016. 11. 4.)까지 약 3개월간의 작업량 1,353,000m³의 금액 4,220백만원 상당만으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공기단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일(2016. 11. 4.)부터는 발파암 소각에 필요한 크라샤 장비를 철수 또는 장비투입계획이나 예정공정을 재조정하여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에서는 크라샤 장비로 반영된 나머지 발파암 소할 물량 2,090,518m³의 금액 6,926백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사에 공식적인 의견을 달라고 3회 걸쳐 이메일로 촉구만 하고 있었다.

또한, 입주협약서 제4조 (b)에 따르면, ‘본 협약당사자들은 별첨4로 첨부된 명세가 협약 효력 발생일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조성공사 명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고, 본 협약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약효력 발생일 및 그 이후에 ○○○○○○(국내법인 또는 설립후에 국내법인)는 때때로 도시공사

에게 조성공사 명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A)요청된 변경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 경비와 비용을 ○○○○○○
○(국내법인 또는 설립후에 국내법인)가 상환하고, (B)그러한 변경을 위해 필요
한 모든 정부의 인허가가 취득되는 것이 그러한 변경 실행조건이며 도시공사는
○○○○○○(국내법인 또는 설립후에 국내법인)의 서면동의를 먼저 받지 않고
는 어떠한 사유로든 조성공사 명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실제 협약 당사자인 ○○사에 앞서 ‘가’에서 적시하
였듯이 추가 비용 및 기간 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여야 함에도
공중을 받은 입주협약 당사자에게는 공식적인 문서나 이메일 등을 한 차례도 발
송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협약업무를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있다.

2.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소홀

위 공사는 「부산○○○○ ○○○○물류도시(0-0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공
사」 ○공구 조성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2013. 9. 16.부터 2018. 1. 12.까지
(주)○○엔지니어링외 3개사와 계약(6,718백만원)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
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
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

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사업장(○공구)내 암 발파를 위해 천공 및 화약 장약 후 발파 시행 5분전에 ○○대로 양방향(약 100m)의 교통 통제를 한 상태에서 발파(12:20)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사업장 지구외 도로방향으로 토석 일부가 암파쇄 방호 시설을 넘어 굴러서 가로수(왕벚나무 1주)가 훼손되고, 약 50분간 ○○대로 방면 2개차로가 통제가 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같은 사고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위 공사와 책임감리가 화약 장약 후 발파암의 비산을 막기 위한 덮개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함에도 덮개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발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시정] ① ○○사와 입주협약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문서 등으로 변경협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고,

② 발파작업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